

##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2. 4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2. 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12. 14) 상정

○ 제8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12. 15) 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류재명)

#### 개정이유

○ 행정자치부에서 실업대책 전담기구 존속기한을 2001. 12. 31일까지 1년 간 연장 승인함에 따라 실업대책총괄과의 기구설치 기한을 연장하고

○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별표 1의 교통지도사업소 기관명 및 원미구 중4동사무소의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#### 주요골자

○ 실업대책총괄과 존속기한 변경

• 당 초 : 2000. 12. 31

• 변 경 : 2001. 12. 31

○ 기관명 변경(제4조 별표 1)

당 초		변 경	
기 관 명	소 재 지	기 관 명	소 재 지
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

○ 소재지 변경(제4조 별표 1)

기 관 명	당 초	변 경
원미구 중4동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-8번지	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2번지

3. 질의답변 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기구가 개편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있는가?	○ 특별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413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에서 실업대책 전담기구 존속기한을 2001. 12. 31일까지 1년 간 연장 승인함에 따라 실업대책총괄과의 기구설치 기한을 연장하고
-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별표 1의 교통지도사업소 기관명 및 원미구 중4동사무소의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주요골자

- 실업대책총괄과 존속기한 변경
  - 당 초 : 2000. 12. 31
  - 변 경 : 2001. 12. 31
- 기관명 변경(제4조 별표 1)

당 초		변 경	
기 관 명	소 재 지	기 관 명	소 재 지
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

○ 소재지 변경(제4조 별표 1)

기 관 명	당 초	변 경
원미구 중4동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-8번지	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2번지

###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별표 1 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의 기관명란 중 “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”를 “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”로 하며 원미구 중4동 소재지란 중 “중동 1159의 8”을 “중동 1032”로 한다.

부칙 제4조 중 “2000년 12월 31일”을 “200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		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	
제4조(소재지) (생략)		제4조(소재지) (현행과 같음)	
[별표 1]		[별표 1]	
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	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
기 관 명	소 재 지	기 관 명	소 재 지
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
원미구 중4동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의 8번지	원미구 중4동	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2번지

부 칙	부 칙
제1조(시행일) (생략)	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(생략)	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(현행과 같음)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생략)	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현행과 같음)
제4조(한시기구 적용시한) 시 분청 경제통상국 실 업대책총괄과의 기구설치 기한은 <u>2000년 12월</u> <u>31일까지</u> 로 하고, 하수정화사업소는 민간위탁 전까지로 한다.	제4조(한시기구 적용시한) ..... ..... <u>2001년 12월</u> <u>31일</u> ..... .....